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98호 2025. 3. 13.(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79호)
-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80호)

훈 령

- 예천군 곤충연구소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예천군 훈령 제468호)

고 시

- 은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테마형)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30호)
-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31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79호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로 한다.

제14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을 “공익목적인”으로 한다.

6. 개발행위준공 이후 재설치 하는 경우. 다만, 당초 개발행위허가 면적 이

하이고, 바닥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동시에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인근 주택 등을 고려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5”를 “10”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63조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

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및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

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

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별표 23의2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것

-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호수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내성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4)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부분에 한정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함)의 총 호수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행위허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 방법 추가(안 제7조)

- 게시판, 군 홈페이지 통해 공고 ⇨ 국토이용정보체계 추가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확대(안 제14조의2)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 : 최대 3년 ⇨ 15년
- 건물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 최대 3년 ⇨ 15년

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안 제24조의2)

- 농어촌도로(면도) 거리제한 기준 삭제 : 당초 300미터
- 심의를 통한 거리제한 기준 변경
 -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공익목적인 경우
-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거리제한 기준 완화 요건 추가
 - 준공 후 재설치의 경우로써 당초의 허가 면적 이하이고, 공작물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동시에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거리제한 미적용

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요건 완화(안 제26조)

-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 증축 ⇨ 10퍼센트 이하 증축

마. 개발진흥지구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 40 ⇨ 60퍼센트(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하

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안 제59조의2, 안 제63조)

-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유산

사.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안 제59조의2)

- 건폐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 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 용적률 완화 : 계획관리지역 125퍼센트 이하

아. 보전녹지·생산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의 입지 허용 규정 신설(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 규정 신설(안 별표 23의2, 안 별표 18)

-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제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차.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 제한 삭제 및 규제 신설(안 별표24)

- 도로에서 50m 이내 제한 기준 삭제, 주택에서 50m 이내 제한 기준 신설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80호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예천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별

표 1에 따른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6. 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학생 및 교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등
-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추진 등

다.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 자격 :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구성 :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 요건 :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 확보
- 환경교육 업무 위탁 : 국·공립 교육시설, 지역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예천군 곤충연구소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훈령 제468호

예천군 곤충연구소 생산물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군 곤충연구소에서 화분매개곤충 연구 및 증식 사업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생산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물"이란 시험연구 및 증식으로 얻어지는 호박벌, 꿀벌 및 그 부산물 등을 말한다.
2. "생산물 관리"란 생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생산물 등록,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생산물 처분"이란 곤충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생산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생산물 처분 용도) 생산물 처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용: 종자, 시료분석, 가공, 홍보(전시회·품평회, 전시·체험용 등) 등 연구사업에 이용하는 생산물
2. 보급용: 판매를 위한 생산물
3. 폐기용: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여 폐기하는 생산물

제5조(관리책임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산물 관리를 위하여 곤충연구소 5급 이상(연구관·행정사무관 포함)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이를 업무 분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생산물 관리를 전담하며, 생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만, 생산물을 시험연구용, 보급용, 폐기용의 용도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담당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③ 담당 팀장은 생산물이 발생하거나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 곤충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생산물의 처분기준) 생산물의 처분 및 판매는 별표 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연구 및 생산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시험연구용, 보급용, 폐기용으로 구분한다.

제7조(생산물 처분) ① 생산물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시험연구용
2. 보급용
3. 폐기용

② 시험연구용은 유상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의 결재를 득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 보급 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보급용은 곤충연구소의 담당팀에서 농가, 판매업체 등에 보급하고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폐기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소장 주관 하에 소각, 매립하거나 폐기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2. 급성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람, 가축 및 환경에 위해한 경우
3. 방역 등으로 생산물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
4. 생산물의 상품 가치가 떨어져 소장이 보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⑤ 연구용 이외의 용도로 생산물을 처분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인수증 사본
2. 보급용 : 매각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3. 폐기용 : 폐기사진, 폐기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제8조(대장비치) 소장은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의 생산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생산물 처분 및 관리 전환에 관한 수불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경비) 생산물의 인도, 인수 및 수송에 따르는 경비는 인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산물(시험연구용·보급용) 인계·인수서

용 도						☐ 시험연구용 ☐ 보급용
인계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	
인수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소			(전 화 :	
)						
순번	품목(품종)		수량	단위	금액	비고
상기 품목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상호 확인하고, 이를 인계·인수합니다. 위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 또는 서명) 인수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생산물 관리 대장

담당자	담당	소장	결재

월 일	월 동 여 왕 별			산 란 통			사육통					
	월 동 수	산 란 유 도 수	잔 량	입 방	폐 기	산 란 현 황	입 방	폐 기	보 급			사 육 현 황
									관 내	관 외	여 왕 별 판 매 수	

※ ① 생산일자 - 월동 및 증식을 마치고 최종 산물을 얻은 날
② 관련근거 - 처리 계획 관련 공문 문서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생산물 처분 대장

담당자	담당	소장	결재

보급 내역 (시험연구용, 판매용 등)							잔량	용도	비고
일자	수량	누계	보급처	처 방 법	금 액 (원)	누 계 (원)			

- ※ ① 보급일자 - 월동 및 증식을 마치고 최종 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분양하거나 농업인, 호박별 생산업체에 판매를 한날
- ② 관련근거 - 세외수입시스템 관련 공문 문서번호

[별표 1]

생산물 처분기준(제7조 관련)

01. 곤충류

곤충종	시험구분	소요량 비율(%)		판매종(꿀벌)
		시험연구용	농업인 보급 및 매각용	
꿀벌	육종시험	100	0	1. 꿀벌 • 원종 봉군 모계, 부계(통)
	사육시험	100	0	
여왕벌	육종시험	0	100	2. 여왕벌
	사육시험	0	100	
수벌	수벌시험	0	100	
	일벌시험	0	100	
완성봉군	완성봉군	0	100	
종봉생산	종봉생산	50	50	

곤충종	시험구분	생산 기준량 (kg)	소요량 비율(%)		판매종(호박벌)
			시험연구용	농업인 보급 및 매각용	
호박벌	육종시험	5/1a	100	0	1. 호박벌 여왕벌, 수벌, 일벌, 완성봉군
	사육시험	10/1a	100	0	
여왕벌	육종시험	1.5/1a	0	100	
	사육시험	2/1a	0	100	
수벌	수벌시험	0.5/수벌1kg	0	100	
	일벌시험	1/일벌5kg	0	100	
완성봉군	완성봉군	5,000봉군	0	100	

* 기타 생산물은 시험연구사업 및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소요량 비율)을 결정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곤충연구소 꿀벌육종 및 호박벌특화 센터의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 예천 군민들에게 화분매개곤충인 양봉과 서양종 뒤영벌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관외 양봉농가와 뒤영벌 생산업체에 연중 우수 봉군 및 여왕벌을 공급함으로써 농작물의 결실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곤충연구소 생산물 관리 및 처분 적용의 범위(안 제2조)
- 나. 곤충연구소 생산물 관리 및 처분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다. 생산물 처분의 용도 (안 제4조)
- 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생산물의 처분 기준(안 제6조 ~ 제7조)
- 바. 대장비치 및 부대경비(안 제8조 ~ 제9조)

고 시

예천군 고시 제 2025 - 30호

은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테마형) 기본계획 고시

은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테마형)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3. 13.

예 천 군



1. 사업의 명칭 : 은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테마형)
2. 사업의 목적
 - 방치된 구. 군립은풍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문화복지, 돌봄교육을 위한 활력증진 공간 확충
3. 위 치 :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90
4.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350, 지방비 150)
5. 주요 사업내용
 - 청소년돌봄센터 조성(A=139.89㎡)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변경 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 변경 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맑은물사업소장)
위 치	당초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7-3번지 외 13필지 변경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70-3번지 외 12필지
점용면적 (허가량)	당초) 영구 : 561.9㎡ 변경) 영구 : 586.7㎡ 일시 : 1,359.4㎡ 일시 : 701.2㎡
점용목적	빗물펌프장 및 관로 설치
사업개요	도시침수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및 관로 설치
점용기간	영구 : 2024년 5월 23일 ~ 영구 일시 : 2024년 5월 23일 ~ 2027년 12월 31일